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우 강 호 의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	일 자	질의 : 2005. 12. 13 답변 : 2005. 12. 14
회 의	제125회평창군의회(정례회)제2차 예결특위		

질문요지

- 2006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

답변내용

-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은 별지와 같습니다.

불 임 : 2006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 1부

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

《 사업 목적 》

-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
- 민·관 상호협력체제 구축으로民間의 군정참여 확대
- 지역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

1 기본방침

-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지역사회단체의 사업역량 제고
- 객관적 심사제도 운영으로 지원사업의 공정·투명성 확보
-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 평가제 운영
-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

2 지원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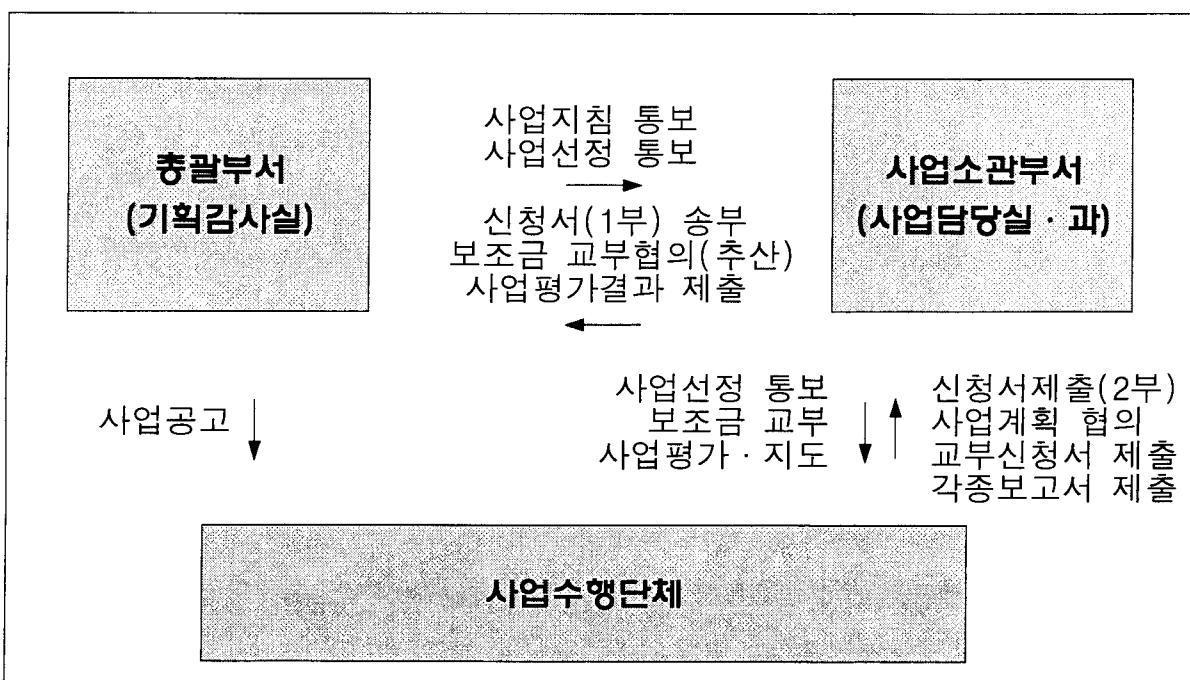
-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
 -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
 -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
-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
-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
 - 새마을·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,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, 문화예술진흥법, 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소비자보호법, 국민체육진흥법,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, 지방문화원진흥법, 재향경우회법,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등

3 운영체계

○ 운영주체별 담당분야

구 분	담 당 분 야
총괄부서 (기획감사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(pool) 사업운영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사업공고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결정사항 해당 실·과 통보 사업운영 실태점검 및 평가
사업소관부서 (사업담당실·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 검토 지원결정사항 단체 통보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징구 보조금 교부 및 집행사항 점검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정산
사업수행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신청서 제출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수령 및 사업운영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서 제출

○ 운영주체간 추진사항



4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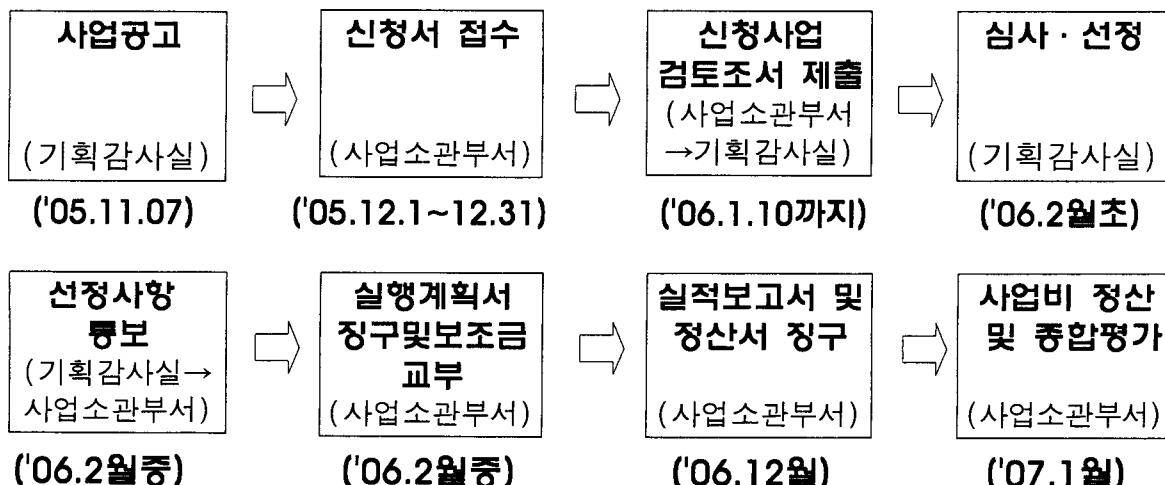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2006. 1월 ~ 12월
- 사업예산 : 429,887천원
- 지원대상 : 군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사업중
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

〈 대상단체 〉
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-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
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
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
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
-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- 추진절차 : 공고→신청·접수→심의·결정→지원→사업시행→평가
 - 지원범위 : 사회단체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, 다만 법령·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
- ※ 기본적 경비는 제외

〈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〉



5 세부추진계획

1. 사업시행계획 공고

- 공고일 : 2005. 11. 7.
- 공고방법 : 군보 및 인터넷(군청 홈페이지등), 개별통보
 - 내고장 소식지, 지역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
 - 전년도 사업신청단체 등에 개별통지(사업소관부서)
- 공고내용 : 신청자격, 지원대상,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, 심사·선정 및 보조금 교부방법, 사업정산 및 평가, 기타 유의사항 등

※ 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문 : 별첨

2.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05. 12. 1 ~ 12. 31.
- 접수장소 : 사업소관부서
 - 사업소관부서별로 접수하여 기획감사실에 신청서 1부 송부
-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 각 2부.

《 사업신청서에 포함될 사항 》

- 사업목적,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방법
-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, 기대효과
- 사업비 집행계획, 기타 평창군수가 정하는 사항

3. 지원사업 심사·선정

가. 심사개요

-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중적 심사체제 운영
 - 행정심사 : 사업소관부서 검토 → 총괄부서 검토
 - 위원회 심사 : 심의위원회 조정·결정

○ 행정심사 : 2006. 1월중

- 신청사업 및 단체의 적격성, 예산의 적정성 등 행정적 판단
사항 검토

○ 위원회 심사 : 2006. 2월중

- 사업내용, 단체의 사업능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
- 편중지원, 선심성지원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정·투명하게 심사

※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

- 16인(공무원 6, 군의원 2, 민간전문가 8)으로 구성

나.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

○ 지원사업 선정

- 행정심사에서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판단

..... 《 단체 및 사업의 적격기준 》

○ 단체 적격기준 :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단체

- 친목도모,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, 기업체, 정당지원단체 제외

○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

- 동일·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
- 사회단체의 사업실적, 사업계획, 단체의 특성, 사회단체 기여도 등

- -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부적정 사업 배제

..... 《 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》

- 신청사업의 효과성·타당성·독창성 등 사업내용
- 단체의 재정여건 및 전년도 유사사업 추진실적
-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

○ 지원금액 결정

- 행정심사시 신청예산중 부적정 예산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- 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심사에서 산정한 사업별 지원예정 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·조정하여 지원금액 확정

《 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》

- 신청사업의 독창성·경제성·파급효과·지역사회기여도·주민욕구 충족도
- 신청예산의 타당성, 자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평가결과
- 단체의 전문성·책임성·활동실적 등

다. 적정수준의 사업비 자체예산 부담

-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부담
- 자부담 예산은 총사업비의 20%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개별법에 따라 특별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인정

라. 종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

- 개별법의 지원취지를 감안 운영비를 지원하되, 사업량 및 활동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

마. 심사방법 및 절차

(1) 행정심사

① 사업소관부서 검토 : 검토조서 작성, 총괄부서 통보

○ 검토사항

-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
 - 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존재 및 관계법령·조례에 적합 여부
 - 여타 보조금이나 기금 등의 신청 또는 선정 여부
- 신청사업의 효과성(최우수·우수·보통·미흡 4등급으로 판정)

-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
- 자체 비용부담의 적정성(적정·미흡 판단)
- 적정지원금액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

..... 《 자부담능력 판단시 고려사항 》

-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비목별 자부담 적정여부 판단
 - 통상적 단체운영경비는 자부담 원칙
 -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
- 사업단체의 재정력·사업실적 등을 고려, 단체의 자부담 능력판단
- 20%미만 부담시 부적정 판단(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있는 단체는 예외)

- 부서별 검토의견 제출 : 2006. 1. 10한(제출서식 별첨)

② 총괄부서 검토 :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

○ 검토사항

-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
 -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부적정 사업비 판단
- 신청 단체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
 - 부적격 단체, 중복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사배제 조치

○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

-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결과, 소관부서 검토결과 등을 종합·정리
- 신청예산중 적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 산정

(2) 위원회 심사

-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: 2006. 2월초
- 서류심사 : 심사자료 및 신청서류를 회의개최 전에 배부
-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

- 신청사업의 심사성적, 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
- 심사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별 지원금액 최종 결정

《 위원회 심사시 고려할 사항 》

- 사업별 지원액 판단시 실무·총괄부서의 검토의견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내용 등을 참고
- 사업별 지원액은 가급적 사업별 적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결정

4. 보조금 교부

- **지원결정 통지** : 기획감사실 → 소관부서 → 사업단체
 -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소관 실·과에 통보하고 각 소관부서에서는 사업단체에 통지
- **교부신청** : 사업단체 → 소관부서
 - 지원결정된 사업단체에서는 사업소관부서에 교부신청서 제출
 - 변경된 보조금에 맞춰 수정한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 제출
- **교부방법**
 -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전에 지원하되, 분기별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며
 - 1회성행사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1차 교부시 전액 교부
- **교부절차** : 소관부서에서 총괄부서에 교부계획 협의를 거쳐 교부
 -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징구(소관부서) ⇒ 교부계획 협의 (소관부서→기획감사실) ⇒ 교부결정 통지(소관부서→사업단체)

5. 사업평가 및 정산

- 평가기간 : 2007. 1월중
- 평가주체 :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(소관부서·총괄부서 협조)
- 평가대상 :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단체
- 평가사항 : 사업추진실태 및 사업목적 달성을여부(성과),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
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, 현지확인 병행
 - 사업소관부서에서 사업실적보고서 징구,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·정리하여 심의위원회 제출
- 평가결과 :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

6. 사업비 정산

- 정산시기 : 2007. 1월(사업이 조기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)
- 정산주체 : 사업소관부서
- 정산내용 : 보조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, 불용액 파악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
- 정산결과 :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세입 조치

7. 기타사항

- 2005년도 지원사업의 사업실적(사업평가 검토보고서) 및 정산보고서 제출 : 2006. 1. 10한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사업별 소관부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에 문의
※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 : 기획감사실(☎ 330-2215)